

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·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심한 악취 발생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제2의 환경오염문제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하여
-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을 갖추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는 1일 200톤(100톤/일×2기) 소각처리용량 규모에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는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에 지역명이나 소각장명, 매립장명 등을 표기할 경우 주민정서상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“환경관리센터”로 정하여 혐오감을 최소화하였음.
(안 제2조)
- 나.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설치사업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규정하였고,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는 매립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최종 매립토록 규정하였음. (안 제4조)

- 다.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치·운영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위탁시 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. (안 제5조)
- 라.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소각시설을 완벽하게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년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하여 시설운영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였음. (안 제5조)
- 마. 환경관리센터시설 사용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,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 철저히 통제토록 하였으며,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·출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도록 규정하였음. (안 제7조)
- 바.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 (안 제9조)
- 사.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및 차량이 폐차되었거나 지정폐기물, 폭발성폐기물 등을 반입할 경우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과 카드를 회수토록 하였음. (안 제9조)
- 아. 폐기물의 반입·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위촉하도록 하고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를 폐기물의 반입·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환경관리센터의 적정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음. (안 제10조)

자. 환경관리센터 관리·운영의 위탁기관은 설치·운전·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관리·운영 위탁 기관을 확대하였음. (안 제11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·동법시행령·동법시행규칙 및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규정의 사항을 근거로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주민정서상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“환경관리센터”로 정하였으며,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규정하여 위생적이고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동 시설의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함과,
-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대하여 주변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화하였으며, 년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규정하였음.

- 환경관리센터의 사용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,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 철저히 통제토록 정하였으며, 시설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음.
- 또한,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 요원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위촉하도록 하고 주민 감시원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환경관리센터의 적정 운영·관리를 도모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